

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

- 국세청, 2023. 8

1. 지방세 정책 여건

1 경제 여건

□ (경기) 소비·수출 등 경기 여건 개선 예상, 불확실성도 상존

- (대내경제) ①(소비)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속, ②(수출) IT 업황 회복 영향으로 수출 개선이 예상되며, ③(투자) 기업심리 개선 등 긍정적 요인 존재
 - 다만 고금리 등은 소비 제약요인으로, 건설투자 선행지표 둔화* 등이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
 - * 건설수주(전년동기비, %) : ('22.1/4) 13.2 (2/4) 22.2 (3/4) 30.5 (4/4)△17.4 ('23.1/4)△11.1
- (대외경제)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*, 기업·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 예상*
 - *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(%) : ('22) 7.8 → ('23) 6.1 → ('24) 4.7
 - ** 세계경제 성장률('23.6.) : (OECD) 2.6%→2.7%, (세계은행) 1.7%→2.1%
 - 다만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국 성장세 둔화 및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

□ (민생) 물가 상승 둔화 흐름 지속 예상, 고용 지표 양호 전망

- (민생경제)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 둔화 흐름 지속 및 대면서비스·보건복지업 중심의 양호한 취업자 증가세 유지 전망
 - 다만, 기상여건, 지정학적 리스크*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 요인 상존
 - * 러·우 전쟁 향방, OPEC+ 추가감산 여부, 흑해곡물협정(~'23.7월) 연장 여부 등

□ (경제구조) 인구위기 등으로 생산성 정체 제약

- (경제구조)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심화*되며 경제 잠재성장률 제약
 - * 생산연령인구 증감(만명, 15~64세) : ('10) 34 → ('15) 19 → ('20) △15 → ('25e) △32
 -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및 3대 구조개혁, 시장경쟁 촉진, 과학기술·첨단산업 육성 등 통한 생산성 향상이 관건
 - ※ 총요소생산성(미국 = 100 기준) : (獨) 92.7, (佛) 90.9, (英) 78.7, (日) 65.6, (韓) 61.4

2 지방세입·세출 여건

□ (세입) 부동산 거래·국세 감소로 지방세 전반에 세수 감소 예상

- (거래세) 부동산 거래 급감*에 따라 전년 대비 취득세 규모는 감소 추세**
 - * 전년동기 대비 1~6월 부동산 거래량 : 주택 △11.5%, 건축물 △25.4%, 토지 △27.3%
 - ** 전년동기 대비 1~6월 취득세 감소분 : △ 32,783억원
 - 단, 금리 변동 등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취득세 징수 규모 반등 여지
- (보유세)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하,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'20년 재산세 수준으로 세부담 정상화
 - 세부담상한제, 과표상한제 등으로 인해 재산세 변동성 감소 전망
- (국세 연동) 소득세 및 부가세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추세*로 이와 연동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규모도 감소 전망
 - * 전년동기 대비 1~6월 징수액 : (소득세) △11.6조원, (법인세) △16.8조원, (부가세) △4.5조원
 - 단, 지방소비세율 인상, 완만한 소비회복세 등은 증가요인으로 작용
- (세외수입)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,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·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

□ (세출) 지역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요인 심화

-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와 함께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확대
- (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) 기업 지방이전 지원, 모빌리티·바이오 등 첨단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 경쟁력 강화
- (민생안정 지원) 집중호우,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·피해시설 복구 및 고금



리 등으로 어려움 겪는 민생경제 안정 지원

- (국정과제 이행)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,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과제 이행에 따라 복지·교육재정 수요 증가

→ 열악한 세입 여건 하,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 등 지역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합리적·효율적인 방향의 지방세 정책 추진 필요

II. 2023년 지방세 정책 추진경과

1 '23년 지방세 주요 정책 성과

□ 균형발전·물가안정·전세사기 대책 등 국정 현안에 적극 대응

- (지역 균형발전) 인구감소지역 內 사업장·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*
 - * ㄱ (창업 및 사업장 이전 기업)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간 100%
 - ㄴ (사업전환 기업)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간 50%
- (물가안정) 대중교통 및 공공요금 인하, 농·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원
 - ※ 한국철도공사 및 SR, 지방도시철도공사, 지방공사·공단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·확대
- (세부담 완화)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* 상향 조정, 법인지방소득세 전 과표구간 세율 인하(0.1%p)로 서민 및 기업 세부담 완화
 - * (1,200만 / 4,600만 / 8,800만 → 1,400만 / 5,000만 / 8,800만원)
- (전세사기 대책)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·추진

< 지방세 분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>

- (지방세 감면지원)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신설 (지방세특례제한법, 6.1. 시행)
- (지방세 채권 안분) 주택경매 시 임차보증금 배당이 확대되도록 지방세 채권의 안분 방식 개선 (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정, 7.2. 시행)

□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 추진

- (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)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, 1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소득 제한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
- (재산세 부담완화)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'23년 재산세 부담을 '20년 이전 수준으로 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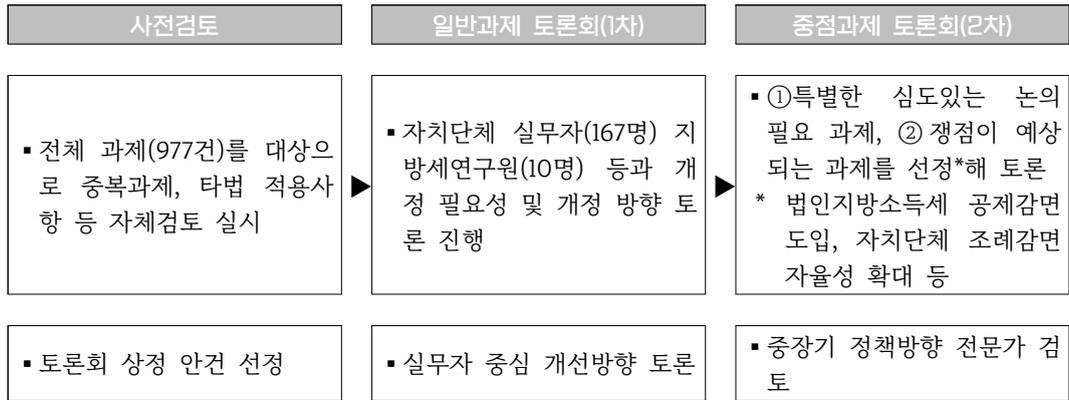
원하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*

* 주택가격별 43~45% 수준으로 인하(지방세법 시행령 개정, 6.30. 시행)

- (재산세 납부유예)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·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양도·증여·상속시점까지 재산세 납부유예
 - * ① 1세대 1주택, ②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,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,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, ⑤ 지방세, 국세 체납이 없을 것

2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 추진경과

- (의견수렴)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
 - (개정건의) 복잡·다변화된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, 관계부처, 지방세 관련 학·협회, 민간전문가 등의 개정건의 수요 조사*
 - * '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및 세정운영 개선 요구과제 총 977건
 - (건의사항 검토) 제출한 개정건의에 대해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* 등이 함께 실현 가능성, 필요성 등을 검토·논의하고 지방세제 개선안 마련
 - * 중앙부처, 지방세연구원, 세무사회, 공인회계사회, 조세법학회, 상공회의소 등



- (지방세발전위원회) 정책 수용성 및 절차적 투명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전문가 정책 자문(6.30.)

- (지방세 지출 정비) 각 부처 일몰연장 및 신설·확대 건의 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원칙 및 법정 절차에 의거 검토, 지방세 지출 재설계
 - 「지방세 지출 기본계획」 수립·국무회의 의결, 각 부처 통보(2.28.)
 -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(~3.31.)
 - 감면 기간 중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감면신설·확대 및 연장 건의 등에 대해 조세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(신설·확대)·심층평가(연장) 수행(3~7월)
 -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(지자체·지방세연구원, 6.15.~16.)

III.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

- ❖ 기업·혁신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 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
- ❖ 안정적인 주민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민·취약 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
- 저출산 대응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
- ❖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방세정 환경을 구축
- ❖ 납세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

정책 목표 지역 경제 도약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

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|
| 추진 과제 | 경제활력 제고 | 민생안정 지원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역 기업 활력 제고 ▪ 기술 혁신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▪ 취약계층 지원 ▪ 서민 경제 지원 |
| 기반 마련 | 합리·효율적인 과세체계 마련 |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세 체계 효율화 ▪ 지방세입 기반 강화 ▪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납세자 권익 보호 ▪ 국민 편의 증진 |

IV.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상세내용

< 주요 개정내용 >

1. 경제활력 제고

지역 기업
활력 제고

- 기획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
- 국내 복귀 기업(유턴 기업)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-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
-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
-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
-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기술 혁신 지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 ▪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▪ 국방·해양과학 및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 정부 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▪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|
| <p>2. 민생안정 지원</p> | |
| <p>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▪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 |
| <p>취약계층 지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▪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▪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·확대 ▪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 |
| <p>서민 경제 지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소비안정)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·감면 연장 ▪ (물가안정) 농수산물 구매·판매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▪ (금융지원) 신탁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▪ 자경농·어민 및 농·어업법인에 대한 지원 연장 |
| <p>3. 합리·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</p> | |
| <p>지방세 체계 효율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▪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▪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 |
| <p>지방세입 기반 강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▪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|
| <p>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 ▪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▪ 지방세연구원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|
| <p>4.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</p> | |
| <p>납세자 권익 보호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 ▪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 ▪ 압류 후 매각·추심의 착수시기 신설 ▪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 |
| <p>국민 편의 증진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▪ 이의신청 시 소액사건 기준 상향 |

1 경제활력 제고

1 지역 기업 활력 제고

□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(특례법) 신설

- 지방투자 확대, 지역활력 제고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 (수도권에서 이전 限)에 대한 감면 신설
 - ※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·지방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 감면안 발표 예정
 - ① (이전기업)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취득세·등록면허세 등 과세특례 부여
 - ② (창업기업) 특구 창업(또는 사업장 신설) 기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 운영 지원

□ 국내 복귀 기업(유턴 기업)에 대한 세제 지원 (특례법) 신설

-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
 - (대상) 과밀억제권역 外로 복귀, 국내복귀기업(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)으로 선정
 - (요건) 해외사업장 폐쇄·양도(축소 제외*)→ 국내에 공장 및 사업장 신·증설 등
 - * 해외사업장 유지(생산량 25% 감축) 기업은 해외이탈 가능성, 감면 취지(복귀시 초기비용지원) 고려 제외
 - (물건)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
 - (추정) 국내복귀기업 이행요건(4년내 해외사업장 양도·폐쇄, 국내 신증설 완료) 미충족 취득 후 직접사용 의무 미이행 및 매각·증여 등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(감면율) |
|---|-------|---|
| 해외사업장을 폐쇄·양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※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기업에 限 ※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限 | <신 설> | 취득세 50%* * 조례로 50%p 추가감면 가능 재산세 75% (5년간) |

□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(지방세법)

- 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

-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(중소기업은 2개월) 내 분할납부 허용하여 중소기업 등 법인의 납세 부담완화

| 구분 |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|
|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| 대상 | <신 설> | 세액이 1백만원(국세 10%) 초과시 ※ 분납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 |
| | 분납기간 | <신 설> | 납부기한 종료일 +1개월 이내 (중소기업은 +2개월 이내) |

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

-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%에서 10%로 감경
 - ※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모두 신고하였음에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가산세(20%)가 부과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 개선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율 | 20% ※ 무신고가산세와 동일 | 10% ※ 과소신고가산세와 동일 |

□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)

- (현행) 파산·회생절차상 법원 촉탁(또는 등기소 직권)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·증자 등에 대한 등기·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에서 제외*
 - * 자본금·출자금 납입 등은 “실질적 재산권 변동”이 있으므로 담세력을 인정
 - ※ 「채무자회생법」에서는 파산,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·등록은 모두 비과세로 규정, 법률간 모순·저촉으로 자치단체별 과세 여부 혼란
- (개선) 파산·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 등기 시 예외 없이 비과세하여 원활한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파산, 회생절차 상 촉탁 또는 직권 등기·등록 | 등록면허세 비과세 (단, 법인의 자본금·출자금 납입, 증자 및 출자전환은 비과세에서 제외) | 촉탁 및 직권에 의한 등기·등록 등록면허세 일괄 비과세 |

□ 자치단체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(특례법)

- 조례감면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 지역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례감면 허용범위 및 예외적 허용 사유 확대

| 구분 |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조례 감면 | 감면 허용범위 |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열거된 경우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| 「지방자치법」 상 자치사무 (추가)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 재산 피해가 확인된 경우 |
| | 사치성 재산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 | | |

□ 창업(벤처)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 연장(특례법)

연장

- 초기 중소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(벤처)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

| 구분 | 현행(감면율) | 개정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창업(벤처) 중소기업 | 취득세 75%·재산세 100%(3년*) * 이후 2년간 50% | 감면 연장 |

2 기술 혁신 지원

□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(특례법)

신설

-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, 선박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선박*에 대한 취득세 세율 경감

* LNG·전기 등 친환경 연료사용 또는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사용 선박

※ (예시) 2등급 친환경 선박(300억원)의 주문건조 시 취득세액 4억 5천만원 경감 (당초) 6억 600만원 (세율 2.02% 적용) → (개정) 1억 5,600만원 (세율 0.52% 적용)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|-------|--|
| 친환경 인증 선박 | <신 설> | 취득세 세율 1-2%p* 경감 * 인증등급별 경감세율 차등 적용 1등급 △2%p, 2등급 △1.5%p, 3등급 △1%p |

□ 연구 분야 등 정부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(특례법)

신설

-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, 문화예술 및 체육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해당 연구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(감면율) |
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① 국방·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② 문화예술·체육진흥분야 공공기관 | <신 설> | 취득세 50% 재산세 50% |

□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 (특례법)

연장

-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요건을 갖춘 친환경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

| 구 분 | 현 행(감면율) | 개 정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녹색건축·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 | (등급별) 취득세 5~10% | 감면 연장 |
|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 | (등급별) 취득세 15~20% | 감면 연장 |
|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| 취득세 10% | 감면 연장 |

※ 각 건축물의 등급별 취득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

□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세제 지원 (특례법)

재설계

- 창업·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당 집적시설 등의 감면을 연장하되,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

| 구 분 | | 현 행(감면율) | 개 정(감면율)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벤처기업 집적시설 | 시 행 자 | 취득세·재산세 50% | (수도권) | 취득세·재산세 35% | △15%p | |
| | | | (지 방) | 취득세 35% | △15%p | |
| | 입주기업 | 취득세·재산세· 등록면허세 중과배제 | (수도권) | 중과 세율 | 취득세· 재산세 50% | +50%p |
| | | | (지 방) | 일반 세율 | 취득세 50% | +50%p |
| | | | | 재산세 60% | +60%p | |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| 시행자 | 취득세·재산세 50% | (수도권) | 취득세·재산세 35% | △15%p |
| | | | (지방) | 취득세 35% | △15%p |
| | 신증축자 | 취득세 50% 재산세 50% (3년) | (수도권) | 취득세 50% 재산세 50%(3년) | - |
| | | | (지방) | 취득세 50%, 재산세 60%(3년) | - +10%p |
|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| | 취득세 75% 재산세 50% *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% 감면 | (수도권) | 취득세 50% | △25%p |
| | | | (지방) | 재산세 50% | - |
| | | | (수도권) | 취득세 50% | △25%p |
| | | | (지방) | 재산세 60% | +10%p |

2 민생안정 지원

1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

□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(특례법) 신설

-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*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
 - * 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,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限

| 구분 | 현행 | 개정(감면율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특례 신설 이후 출생하는 자녀의 부 또는 모 | <신설> | 취득세 100% (500만원 한도) |

□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(특례법) 연장

-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(지역아동센터)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| 구분 | 연행 | 개정(감면율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아동복지시설 (지역아동센터) | 취득세 100% 재산세 100% | 감면 연장 |

2 취약 계층 지원

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(특례법)

연장

- 고령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| 구분 | 연행(감면율) | 개정 |
|------------|---|-------|
| 노인 복지시설 | 경로당 취득세 100%·재산세 100% ·지역자원시설세 100% | 감면 연장 |
| | 무료 취득세 100%·재산세 50% | 감면 연장 |
| | 유료 취득세 25%·재산세 25% | 감면 연장 |

□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(특례법)

연장

- 청소년의 자기역량계발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| 구분 | 연행(감면율) | 개정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청소년 단체 | 취득세 75%·재산세 100% | 감면 연장 |
| 청소년 수련시설 | 취득세 100%·재산세 50% | 감면 연장 |

□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·확대(특례법)

연장+신설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,
 -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훈보상 대상자*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

* 국가 수호·국민생명보호 외 통상의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자

| 구분 | 현행(감면율) | 개정(감면율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| 취득세 100% | 감면 연장 |
|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등 | 취득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· 등록면허세·주민세 100% | 감면 연장 |
| 보훈 보상 대상자 등 보철용 자동차 | <신설> | 취득세 50% 자동차세 50% |

□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(특례법)

신설

-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*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지방세 법정** 감면지원 신설(현재 물적 피해지원만 규정)
 - *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·배우자·자녀 / ** 현재 '행안부 지침'으로 운영 중
 - 특별재난지역 지정없는 재난의 경우, 자치단체는 행안부 통보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지방의회 의결 추진해야 하는 의무절차 신설

| 구분 | 현행 | 개정(감면율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유가족에 대한 감면 | <신설> | 취득세·주민세·자동차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100% ※ (취득세) 상속 취득분 限 (주민세) 개인분, 사업소분 限 ※ (지원기간) 사망일이 속한 회계연도 1년간 |

3 서민 경제 지원

□ (주거안정)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(지방세법)

연장

-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(과표구간별 세율* 0.05%p 인하) 3년 연장
 - * (~6,000만원) 0.1%, (6,000만원~1.5억원) 0.15%, (1.5억원~3억원) 0.25%, (3억원~) 0.4%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| 재산세 세율 0.05%p 인하 (‘21년~’23년 한시) | 세율 특례 연장(3년) |

□ (소비안정)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·감면 연장 (특례법)

연장

- 영세 개인사업자, 근로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,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·감면 연장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·감면 | 국세(소득세) 공제·감면액의 10% | 감면 연장 |

□ (물가안정) 농수산물 구매·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연장(특례법)

연장

- 농·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·수산물 구매·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농·수협 등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| 구분 | 현행(감면율) | 개정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농·수협 등 중앙회 | 취득세 25% 재산세 25% | 감면 연장 |
| 농·수협 등 지역조합 | 취득세 100% 재산세 100% | 감면 연장 |

□ (금융지원) 신협·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연장(특례법)

연장

- 서민·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·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| 구분 | 현행(감면율) | 개정(감면율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신협· 새마을금고 | 신용사업 취득세·재산세 100% | 감면 연장 |
| | 복지사업 등 취득세·재산세 100% | 감면 연장 |

□ 자경농·어민 및 농·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(특례법)

연장

- 농어촌 인구 유입,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경농민 및 농·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| 구분 | | 현행(감면율) | 개정 |
|----|------|--|-------|
| 농업 | 자경농민 | 취득세 100% | 감면 연장 |
| | 농업법인 | 취득세 50%*, 재산세 50% * 초기 법인(설립 2년內) 취득세 75% | 감면 연장 |
| 어업 | 자영어민 | 취득세 50% | 감면 연장 |
| | 어업법인 | 취득세 50%, 재산세 50% | 감면 연장 |

3 합리·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

1 지방세 체계 효율화

□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(지방세법)

- (현행) 항공기를 리스 방식으로 국내 수입 시 금융리스는 취득세를 과세, 운용리스는 비과세 중이나, 법 규정상 양자 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음
- (개선)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실질적 차이* 등을 반영하여 금융리스 과세, 운용리스 비과세 라는 과세 관행을 법 문언으로 명확화
 - *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예정하는 등 사실상 취득으로 보는 금융리스 와 임대차 성격의 운용리스는 달리 볼 필요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취득세 | 금융리스 과세 운용리스 비과세 (법 문언상 구분 모호) | 금융리스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토록 규정 명확화 |

□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(지방세법)

- (현행) 신탁 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신축건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'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 신탁수수료'가 포함되는지 불분명
- (개선)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투입한 신탁 수수료 포함)을 과세표준에 포함토록 문언 명확화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|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|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(위탁자 지급비용 포함) |

□ 교환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(특례법)

- (현행)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하되, 부과 세액이 종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과세 중
 - 친환경 자동차로 교환 시 중복 특례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친환경 자동차 감면*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
 - * (하이브리드차) 40만원 한도 면제, (전기·수소차) 140만원 한도 면제
- (개선) 요건 해당(일반 내연차 → 친환경차) 시 초과분에 대하여도 친환경자동차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도록 명확화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중복감면 예외 규정 | 천재지변, 수용 등 대체취득 | (추가) 교환자동차 취득 |

2 지방세입 기반 강화

□ 지방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(특례법)

- (감면요건 일원화) 개별 감면요건을 '설치·운영'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'직접 사용'으로 명확화*,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
 - * 그 외 일반 규정에서는 소유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·용도에 맞게 “직접 사용”하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 중

| 구분 | 현행(감면요건) | 개정(감면요건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일반 감면대상 | 직접 사용 | 직접 사용 |
| 아동복지시설·노인복지시설 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·과학관 | 설치·운영 사용 | |

- (감면요건 강화) 감면체계가 유사한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감면요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농업법인 감면요건 | 경영정보등록 의무 포함 | 경영정보등록 의무 포함 |
| 어업법인 감면요건 | 경영정보등록 의무 미포함 | |

- (사후관리 강화) 유사 납세자 간 동일 기준의 감면 및 추징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 도모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|---|---|
| 위탁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 추징 요건 ※ ('23년 개정) 위탁 운영 시 취득세 50% 경감 신설 | <신 설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② 위탁 운영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·他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|
| 반환공여구역의 추징 요건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추징 유예기간) 3년 ② 他 용도 사용 시 추징요건 부재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추징 유예기간) 3년 → 1년 ② 직접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他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토록 규정 |

□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(기본법)

-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*를 부담토록 개선
 - * 법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징수금에 대해 소유주식 한도 내에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 부담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출자자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 해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 ②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 시 | (추가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외국법인의 출자자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 제한 시 |

3 자치단체 공동협력 기반 조성

□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(기본법)

- 집단기획소송 등의 증가로 인해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 중인 소송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,

- '지방세 소송 등'의 제기 및 종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'관련 자료'* 제출 의무를 부여

*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, ② 청구일자 및 답변서 제출기일, ③ 사건 개요, ④ 종결 시 결과 등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지방세 소송자료 제출의무 | <신 설> | 지방세 소송 등 제기 또는 종결시 10일 이내 자료* 제출 * 사건번호, 사건명, 사건개요, 결과 등 |

□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(지방세법)

- 담배소비세 수시부과·징수 사유 발생 시, 자치단체별로 각각 부과·징수하고,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낭비 방지를 위해,
 -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고 추후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비정상적인 방법(불법·허위신고)으로 제조·반입한 경우* * 담배소비세의 수시부과 사유 | 특·광역시, 시·군이 각각 부과·징수 |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·징수 ※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지자체 납입 |

□ 지방세연구원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(기본법)

-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에 따른 책임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·결산, 경영실적 평가, 재무 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|-----|---|
|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의무 | 신 설 | 예산, 결산서, 예산집행 현황, 경영실적평가, 외부기관의 감사, 재무 현황 등을 공시 |

4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1 납세자 권익 보호

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(기본법)

- 소액채납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*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
 - *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

□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(지방세법)

- (현행)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배제
 -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경우 등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, 중과세율이 적용됨과 함께 가산세*도 취득시점부터 계산
 - * 과소신고가산세(10%)와 납부지연가산세(일 0.022%)를 모두 합한 세액
- (개선)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,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,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시에만 부과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택 유상거래 시 중과세의 예외 제외 사유 발생 | 별도 신고절차 없음 | 중과세의 예외에서 사후에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60일 이내 신고 |
| | 과소신고가산세 |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없음 |
| | 납부지연가산세 (취득시점부터) | 신고기한 내 납부 시 없음 |

□ 압류 후 매각·추심의 착수시기 신설(징수법)

- ※ 국세일치('20.12.29.)
-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·추심의 착수시기 의무화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압류 후 매각·추심의 시기 | <신 설> | 압류 후 1년 이내 ※ (예외)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한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 진행 등 |

□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 (지방세법)

-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면제 신설
 ※ (소유분 자동차세) 세액 2천원 미만에 대한 징수면제는 既 규정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*의 주행분 자동차세 | <신 설> | 징수 면제 |

* (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사례) 유류 샘플 소량 수입 통관, 레저·연구 목적의 오토바이·오토 등 수입 시 주입된 유류

2 국민 편의 증진

□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(징수법)

- ※ '23년 국세 동반개정
-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(전세권 ·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)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,
 -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매수대금 납부 | ① 매수대금 전체를 납부하고, ② 배분기일에 채권액 수령 | 매수인은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분기일까지 납부 |

□ 이의신청 대리인 기준 변경 (기본법)

- ※ '23년 국세 동반개정
-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이의신청 대리인*으로 선임가능한 지방세 이의신청 신청금액 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
 * 지방세 이의신청시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규정

| 구분 | 현행 | 개정 |
|--|------|------|
| 지방세 이의신청 시 변호사 외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금액 기준 | 1천만원 | 2천만원 |



V. 세수효과

- '23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△820억원
 - (증가 요인) 유사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면율 조정 등
 - (감소 요인)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지원 신설,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

VI. 추진 일정

- (대상 법률: 총 5개)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지방행정재·부과금법
- 향후 일정
 -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: 8월 17일(목)
 - 입법예고(31일간) : 8월 18일(금) ~ 9월 18일(월)
 - 법제처 심사 : 8 ~ 9월
 - 국회 제출 : 10월 중

참고 1 -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(요약)

1 지방세기본법

※ □ : 주요 개정내용(본문내용과 동일)

| 제목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①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(안 법\$47) | ○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*를 부담토록 개선 * 법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| 국세일치 |
| ②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(안 법\$48) | ○ 선의의 사업양수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도인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한정 | 국세일치 |
| ③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(안 법\$55) | ○ 소액체납자 세부담 완화 및 국세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*를 면제하는 기준금액 상향 *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| |

| 제목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④ 소액심판 기준 상향에 따른 대리인 관련 기준 변경(안법§93) | ○ 이의신청 대리인*으로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선임가능한 지방세 이의신청 금액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* 지방세 이의신청시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규정 | 국세 동반 |
| ⑤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(안 법§150의2) | ○ 행안부가 '지방세 소송 등*'의 제기 및 종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'소송 등의 관련 자료 제출'을 의무화 * 심판청구, 감사원 심사청구, 소송 등 ** 사건번호 및 사건명, 청구일자 및 사건 개요, 결과 등 | |
| ⑥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 등(§151) | ○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에 따른 책임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·결산, 경영실적 평가, 재무 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| |
| ⑦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| ○ 「우편법」, 「국세기본법」개정사항 반영 | |

2 지방세징수법

| 제목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① 압류 후 매각·추심의 착수시기 신설 (§52, §61, §70) | ○ 체납자 재산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·추심 등을 착수하도록 규정 신설 - (예외) 법률상·사실상 매각·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| 국세 일치 |
| ②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(§94의2) | ○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계제도 신설 | 국세 동반 개정 |
| ③ 매각대금 배분절차의 개선 (§102, §102의2, §103) | ○ (배분절차)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배분을 실시 -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심판청구등으로 미확정된 부분은 배분 유보 ○ (배분금전 예탁) 채권자가 배분계산서에 대한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배분이 유보된 금전을 지자체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| 국세 일치 |
| ④ 조문 정비 (§9, §11, §71) | ○ 반복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체납자의 불복수단과 관련된 조문 정비* * '이의신청, 심판청구,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' → '심판청구 등' | 국세 일치 |



3 지방세법

| 제목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|--|----|
| ① 리스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 (§7) | ○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(금융리스)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 명확화(운용리스 제외) | |
| ②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 (§10조의3, §22조의2) | ○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에 혼란이 없도록 규정 명확화 ○ 신탁수수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(건설비용 등)될 부분과 아닌 부분(분양보수 등)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에 어려움이 있어 수탁자가 신탁수수료를 계정별로 구분 기장하도록 근거 마련 | |
| ③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·납부 기한 개선 (§20①) | ○ 유상취득(신고기간 60일)과 무상취득(신고기간 3개월)이 혼재된 부담부증여*의 취득세 신고기간을 신고기간이 긴 무상취득 신고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 * 10억 원짜리 주택(주택담보대출 4억 원)을 자녀에게 증여하면, 대출 4억 원은 유상취득, 6억 원은 무상취득 | |
| ④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예외 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(§20③) | ○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을 취득하는 등 주택 취득 시 중과가 배제되었으나,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등 사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가산세 미부과* * 현재는 사후에 중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산세 부과 | |
| ⑤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 (§26②) | ○ 현재는 회사정리 등과 관련된 법원 등의 촉탁에 따른 등기·등록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면서도 자본금 납입·증자 등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나, 기업회생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「채무자회생법」 상의 법원의 촉탁 등은 예외 없이 비과세 | |
| ⑥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 (§27) | ○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(5-10년)이 경과한 물건을 등록할 때 현재 '취득 당시 가액'을 과세표준으로 하나, 장기간이 경과한만큼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'등록 당시 가액'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변경 | |
| ⑦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 (§50) | ○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납세지를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※ 기존 세관 소재 지자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여 고액의 체납액이 특정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 | |
| ⑧ 미납세반출 후 타용도 사용시 추징규정 삭제 (§61) | ○ 미납세 반출후 다시 반입된 담배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게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 | |

| 제목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|--|-------|
| ⑨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 규정 신설(\$62) | ○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 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※ 담배소비세 수시부과·징수 사유 발생시 과세권자인 특·광역시, 시·군(166개)이 각각 부과·징수하고,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 | |
| ⑩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(\$103의23, \$103의37) | ○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1개월*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* 중소기업은 2개월 | |
| ⑪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(\$103의24) | ○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%에서 10%로 감경 | |
| ⑫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(\$103의61) | ○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'24년 과세기간까지 2년 연장 | |
| ⑬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(\$103의37) | ○ 연결집단의 결손이 소득보다 큰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세액배분 방식*을 규정 * 각 연결법인별 소득과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| 국세 일치 |
| ⑭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확대(\$103의53, \$103의54) | ○ 동업기업인 동시에 동업자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동업기업 특례*가 적용되도록 요건 합리화 * 동업기업(법인)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업자(출자자)에게 과세하고 동업기업은 비과세 | 국세 일치 |
| ⑮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(\$118의2) | ○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화 ※ 현행 납부유예 대상자를 규정하면서,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세율 특례 조항을 인용하여 혼란이 있음 | |
| ⑯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(부칙\$2) | ○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*를 3년간 추가 연장 *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재산세율을 0.05%p씩 인하한 특례세율 한시 적용 중('21년-'23년) | |
| ⑰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 면제 신설(\$137) | ○ 주행분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 | |
| ⑱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(\$143) | ○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*가 일치함을 명확히 함 * (현행)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(개선) 건축물 또는 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※ 소방분은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며, 재산세 과세기준일, 납기 등 규정을 준용 중 | |
| ⑲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 (\$152) | ○ 담배소비세를 세관장이 부과·징수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'납입'하는 절차 규정이 있어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에도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'납입' 문구 추가 | |

4 지방세특례제한법

| 제목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①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(\$4) | ○ 지자체 현안 대응력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조례 감면 활성화 기반 마련* * 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자치단체 사무로 확대,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대상 기준 완화 등 | |
| ② 농업분야 사후관리체계 정상화(\$6 등) | ○ 감면 목적 및 감면 물건이 유사한 납세자*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정규정의 통일적 정비 * 자경농민·귀농인·농업법인 | |
| ③ 어업법인 감면요건 강화(\$12) | ○ 감면대상 어업법인에 대하여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* * 농업법인은 '20년부터 농업경영정보의무 既부여 | |
| ④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신설(\$19) | ○ 직장 어린이집 용도로 위탁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관리 규정 신설 * (現) 직접 사용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사후관리 규정 有 | |
| ⑤ 감면요건 “직접 사용” 통일적 규정(\$19의2 등) | ○ 입법취지 및 특례 체계에 부합토록 감면 요건을 “직접 사용”으로 통일·명확화* * (現) 일부 조문상 “설치·운영”, “사용” 등으로 규정 | |
| ⑥ 생애최초 주택 감면요건 명확화(\$36의3) | ○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요건인 “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”의 범위 명확화 | |
| ⑦ 법인 적격분할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(\$57의2) | ○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격분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 ※ (국세) 적격분할 대상에서 임대업 제외 既개정('20년말) | |
| ⑧ 창업중소기업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(\$58의3) | ○ 감면 제외대상인 “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”를 영에서 구체화*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* 개인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| |
| ⑨ 반환공여구역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강화(\$75의4) | ○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유사 감면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정요건 보완·정비 | |
| ⑩ 소멸·멸실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(\$92) | ○ 소멸·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면제는 비과세 성격으로 지방세법으로 일원화* * (現) 동일 면제 내용을 2개의 법(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)에서 각각 규정 중 | |
| ⑪ 재난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(\$92) | ○ 국가적 재난(특별재난지역선포 등) 발생시 신속·통일적 감면 지원되도록 체계 구축* *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유가족 지방세 감면, 그 외 전국적 재난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마련 | |
| ⑫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(\$179의2 등) | ○ 건축 중인 경우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*하는 등 체계 명확화 * (現) 법상 별도 위임없이 영에서 규정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⑬ 교환자동차 중복 특례 명확화(§180) | ○ 제작 결함으로 인해 교환 취득시 중복 특례 적용이 가능*하도록 명확화 * 종전 취득시 부담한 세액까지는 세액공제 + 종전부담 세액 초과분도 개별 감면요건 충족시 감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

| 제목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①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(법 부칙) | ○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일정 조정에 따라 동일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을 '24. 1. 1.에서 '25. 1. 1.로 조정 | |

붙임 2 - 2023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(안) 요약표

(단위 : 억원, '22년 결산 기준)

| 유형 | 주요 내용 | | 지출액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------|--------|-----|
| | 분야 | 세부 내용 | 현행 | 향후 | 증감 |
| 합 계 | | | 20,266 | 20,988 | 722 |
| 소 계 | | | - | 856 | 856 |
| 신설 (9건) | 농·어업 | ▶농협경제지주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(13) | - | 13 | 13 |
| | 사회복지 | ▶출산가구 주택(625) ▶보훈대상자 자동차(8) | - | 633 | 633 |
| | 교육·과학 | ▶지방대 수익용부동산 (10) ▶연구공공기관 부동산 (28) | - | 38 | 38 |
| | 문화·관광 | ▶문화예술·체육진흥 공공기관 부동산(18) | - | 18 | 18 |
| | 수송·교통 | ▶친환경 인증 선박(66) | | 66 | 66 |
| | 국토·지역 | ▶기회발전특구(-) ▶국내복귀기업(88) | | 88 | 88 |
| 소 계 | | | 20,046 | 20,046 | - |
| 연장 (현행 수준) (33건) | 농·어업 | ▶자경농민·자영어민 ▶농어업법인 등 | 1,765 | 1,765 | |
| | 사회복지 | ▶아동·노인복지시설 ▶국가유공자 등 | 553 | 553 | |
| | 교육·과학 | ▶녹색인증 건축물 ▶에너지절약형 주택 | 115 | 115 | |
| | 기업구조 | ▶창업(벤처)중소기업 ▶학교내 창업보육센터 | 989 | 989 | |
| | 공공행정 | ▶신협·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등 부동산 | 162 | 162 | |
| | 지방소득세 | ▶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·감면(국세와 일치) | 16,462 | 16,462 | |
| 소 계 | | | 127 | 86 | △41 |
| 연장 (재설계) (7건) | 사회복지 | ▶국가유공자 단체 범위 확대 | 5 | 6 | 1 |
| | 교육·과학 | ▶과학기술분야 연구공공기관 부동산 | 91 | 54 | △37 |
| | 기업구조 | ▶벤처기업집적시설 등 | 31 | 26 | △ 5 |
| 소 계 | | | 93 | - | △93 |
| 종료 (4건) | 교육·과학 | ▶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| 43 | - | △43 |
| | 기업구조 | ▶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도시 중과세 제외 | 0 | - | 0 |
| | 수송·교통 | ▶지능형해상교통정보 무선국 등록면허세 ▶대기업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| 0 | - | 0 |
| 소 계 | | | 50 | - | △50 |